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침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환경교육도시 지정	1
제3장 환경교육도시 심사 자료 및 지표	5
제4장 보칙	7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침

제정 2021. 12. 29

개정 2023. 3. 24

개정 2026. 3. 11

제1장 총 칙

1.1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환경교육 도시의 지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법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자 할 때 또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한다.

제2장 환경교육도시 지정

2.1 환경교육도시 개념

-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를 의미한다.

2.2. 지정 목적

-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지정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교육 역량 향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3 지정 대상

-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2.4 지정 절차

계획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	매년 초
▼			
공모·접수	지정 공모 및 신청서 접수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공문	20일 이상
▼			
심 사	지자체 제출 서류 평가	평가위원단	60일
	지자체 현장 평가	평가위원단	
	종합 평가	평가위원단	
▼			
지정 심의	안전 상정 및 심의	환경교육위원회	
▼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5 지정계획 수립

-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2)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 수립 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 지정계획의 공고 방법
 - 지정신청서 평가항목 및 심사계획
 - 지정 도시 수

2.6 지정계획 공고

- 1)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은 공문 발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별지서식 제14호」>의 지정신청서에 <서식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교육도시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4호>

○ 환경교육도시 운영계획서<서식1>

-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기반에 관한 사항

-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의 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7 지정요건

○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할 것

2.8 심사 및 선정

1) 평가위원단 구성·운영

○ 평가위원단은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중 전문성을 갖춘 자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청 지자체의 환경교육센터 업무를 담당하거나 환경교육센터 위탁 기관의 등기 이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배제한다.

○ 평가위원단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관한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 종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방법

○ 심사 전 지정신청서에 대해 지방·유역환경청의 사전검토를 받아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공모사업 절차 개선방안」(‘21.10.29) 반영

○ 심사는 시·도의 광역지자체와 시·군·구의 기초지자체를 구분하여 각각 진행한다.

○ 서류심사(100점, 가산점 별도) 및 현장심사(5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한다.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한다.

- 평가위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 심사 분야 중 계획 분야의 “지역계획수립 성과” 및 성과 분야의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 문항은 광역지자체에 한해 매년 시행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 결과와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현장심사는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대상 수의 2배수 이내 범위에서 실시한다.

※ 서류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2배수의 지자체에 포함되더라도 현장심사에서 제외(지정 불가)

2.9 지정 및 표시 등

1) 환경교육도시 지정

- 평가위원단의 종합 심사결과를 환경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1순위 부적격 시, 2순위 심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자체에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2) 지정의 표시

- 지정받은 신청인은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표시 또는 지정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지정기간의 종료,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2.10 지정유효기간

- 환경교육도시 지정유효기간은 <시행규칙 제13조4항>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장 환경교육도시 심사 자료 및 지표

3.1 심사 지표 구성

- 심사 지표는 <시행규칙 제13조(환경교육도시)>에 근거하여 ①환경교육 추진 기반의 우수성 ②환경교육 추진실적의 우수성 ③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서류 심사 지표와 현장 심사 지표를 구분하여 구성한다.

3.2 심사 자료 작성

-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1>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역환경교육 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
 -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시·도 환경교육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에 제출한 시·군·구 환경교육계획 및 추진 실적 보고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 ※ 기초지자체의 경우 환경교육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된 계획이나 보고서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체 작성할 수 있음

3.3 심사 기본 요건

- 환경교육도시 신청 자격요건으로 <표1>과 같이 ①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여부 ②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여부, ③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여부를 두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1> 환경교육도시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광역	기초
1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여부	○	○
2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여부	○	○
3	지자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여부	○	○

3.4 서류 심사 지표

- 1) 서류 심사 지표는 “기반 분야”, “성과 분야”와 “계획 분야”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광역은 28개 평가항목으로, 기초는 2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 2) “기반 분야”는 행정적·재정적 기반, 지원·협력 기반, 그리고 시설 기반의 3개 지표에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며, 광역에 가산점 항목 2개와 기초에 가산점 항목 1개를 포함한다.
 - 행정적·재정적 기반 : 지자체장의 의지, 환경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환경교육 예산이 충분한지 평가
 - 지원·협력 기반 : 환경교육 실행 기반(지역환경교육 센터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채용 등), 지역 환경교육 협력체계(환경교육위원회 등)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평가
 - 시설 기반 : 충분한 환경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 3) “성과 분야”는 지원·운영 성과, 협력·환류 성과의 2개 지표에 광역은 7개 평가항목, 기초는 6개 평가항목과 1개 가산점 항목으로 구성한다.
 - 지원·운영 성과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 위한 지원사업 운영 여부, 지역민 참여형 행사 운영 여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 협력·환류 성과 : 환경교육위원회 및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환경교육활성화 노력 여부,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혹은 의견수렴의 장 마련 및 의견반영 여부를 평가
- 4) “계획 분야”는 지역환경교육계획과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의 2개 지표에 1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 지역환경교육계획 : 국가(광역)환경교육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지역 특성 반영 여부, 관리방안의 체계성, 실행가능성, 분야별 균형성, 추진과제별 연도별 성과 지표 제시여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
 -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 : 환경교육도시의 비전 및 추진방향의 적절성, 사업 계획의 우수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절성, 추진과제와 일정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성과지표의 명료성 등을 평가

3.5 현장 심사 지표

- 1) 현장 심사는 신청 지자체에 현장 방문하여 제출서류 내용을 검증하고 지자체장 등의 면담 등을 통해 3개 분야, 5개 지표를 심사한다.
 - 기반 분야 : 지자체장의 면담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환경교육도시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가, 지자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구성원의 환경교육 및 지역환경교육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

- 성과 분야 : 지역환경교육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 및 추진실적,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협력 및 기여 정도 등을 평가
- 계획 분야 :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계획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를 평가

제 4장 보칙

4.1 행정사항

- 환경교육도시는 도시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소재지		
	담당부서	담당자명(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사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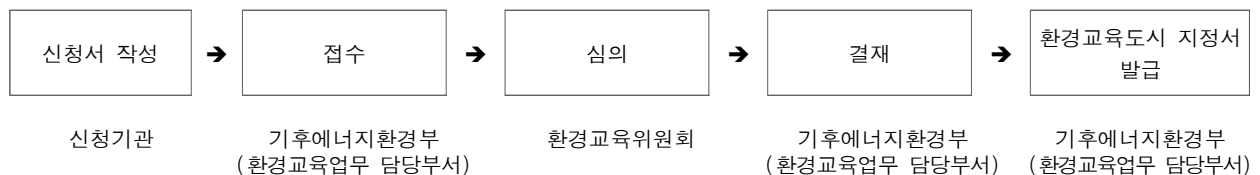
신청인

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요건서류) 지자체 환경교육활성화조례 1부,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1부, 지역환경교육 센터 지정서 1부 * 요건서류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2. 환경교육도시 운영계획서 1부. 3. 첨부자료(증빙서류 등)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 운영계획서>

환경교육도시 운영계획서

20 . . .

○○(특·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

목 차

I. 환경교육 기반	
1. 행정적·재정적 기반.....	
2. 지원·협력 기반.....	
3. 시설 기반.....	
II. 환경교육 성과.....	
1. 지원·운영 성과.....	
2. 협력·환류 성과.....	
III. 환경교육 계획	
1. 지역환경교육계획(요약)	
2.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	
IV. 첨부자료(증빙자료 등)	

I. 환경교육 기반

I -1. 행정적·재정적 기반

I -1-1. 환경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 전문인력은 환경교육사(3급 이상) 취득자, 환경교육 전공자, 5년 이상 경력자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유 작성

<증 1-1-1> 환경교육 전담부서 구성 및 업무분장표(내부결재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 전문인력 자격증 사본

구 분	20〇〇년 현재		
부서명	과 (팀, 계, 담당)		
전담인력	직급	업무분장 상의 업무	전문인력 해당 여부

I -1-2. 환경교육 관련 예산(최근 3년간*)

*제출년도 포함

☞ 지자체 인구수 대비 1인당 환경교육 예산을 환산하여 상대평가

<증 1-1-2> 환경교육 예산표

※환경교육 예산 범위

구분	분류	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예시
지구 환경	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기후변화, 탄소중립, 신기후체제, 국제협력, 그린뉴딜,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 해수면 상승, 빙하 등
	② 대기	미세먼지, 무공해 자동차, 비산먼지, 악취, 배출가스, 공기 등
	③ 에너지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약, 에너지 전환 등
생활 환경	④ 소음	소음 진동, 층간소음, 생활 소음 등
	⑤ 폐기물 및 자원순환	폐기물, 자원순환, 폐자원, 포장폐기물,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재활용, 아나바다, 등
	⑥ 환경보건	환경보건, 화학물질, 화학제품,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용품, 환경성질환, 라돈, 빛 공해, 석면, 건강, 새집증후군, 식품첨가물, 전자파, 식품오염 등
자연 환경	⑦ 물	물관리, 수질관리, 물 환경정책, 생활하수, 물순환, 4대강, 물 이용, 수질오염총량제, 수질 측정, 가축분뇨, 비점오염, 하수도, 물 재이용, 물 부족, 수돗물, 물발자국, 강, 하천, 저수지, 직강화, 기름유출, 해양오염 등
	⑧ 토양	토양, 농약, 지하수, 토양오염과 침식 등
	⑨ 생태계	생물축정망, 습지, 보호지역, 생태복원,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철새, 야생동물, CITES, 동물원, 동물, 식물, 생태계, 외래종, 서식지, 남획, 숲 체험, 산불, 산림보전, 산림훼손, 생활녹지 등
환경 문화	⑩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목표, 환경 일자리,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금융, 녹색산업, 녹색기술, 환경윤리, ESG, 녹색소비, 공정무역, 적정기술, 사회적기업, 생태 문명, 환경예술, 환경정의, 생태 문명, 전통 생태 지식 등
	⑪ 생명윤리	동물실험, 생명윤리, 동물복지, 환경권 등

※ 종사자 교육, 단순 홍보사업,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사업 등은 불포함

○ (해당지자체 인구 수) 000000명(전년도 1231 기준)

<단위:백만원>

년도	지자체 총 예산	환경교육 예산	
년		총액	(100 %)
		국비	
		지방비	
		기금	
년		총액	(100 %)
		국비	
		지방비	
		기금	
년		총액	(100 %)
		국비	
		지방비	
		기금	

I -1-3. 지자체의 환경교육활성화 조례

<증 I -1-3> 조례 전문

- 제정일 :
- 최근 개정일자

I -1-4. 지자체장의 환경교육도시 조성 의지

☞ 최근 3개년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관련 공약 및 핵심정책, 선언, 협약, 행사 실적 등을 작성

<증 I -1-4> 정책집 등

-
-
-
-
-

I -2. 지원·협력 기반

I -2-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제출년도 포함

☞ 광역 지자체의 경우 광역 시도 내의 모든 지역 환경교육센터(광역, 기초)를 기입
<증 I -2-1> 지역환경교육센터 예산서

<단위:백만원>

구분	지정일	기관명	센터 예산	지자체 지원 예산	상근 직원수(명)
광역	2020.6.1				5명
기초					

I -2-2. 지역환경교육센터 전문 인력 현황

☞ 전문인력은 환경교육사(3급 이상) 취득자, 환경교육 전공자, 5년 이상 경력자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유 작성
☞ 광역 지자체의 경우 광역 시도 내의 모든 지역 환경교육센터(광역, 기초)를 기입
☞ 전문인력은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직접 채용(상근 또는 기간제)되어 근무하는 인력에 한하며, 수당 형태로 활동하는 인력 및 외부 위촉 강사 등 비상근 인력은 포함하지 않음
※단, 센터장은 비상근이어도 관리·운영책임자로 포함 가능
<증 I -2-2> 전문인력 자격증 사본, 지역환경교육센터조직도(직원명포함)

구분	지정일	기관명	전문인력		
			채용일	성명	자격사항
광역/ 기초	2020.6.1		2015.12.5	홍O동	환경정교사2급
			2018.1.1		환경교육사3급
			2020.12.15		OO센터 환경교육강사 7년

*지역환경교육센터가 1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해서 기입

I-2-3. 환경교육 거버넌스 추진 기반

①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 현황(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 ☞ (지역) 환경교육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 여부를 제시하고 환경교육사업 추진 관련 주요 활동 실적이 있다면 제시(기금 사업에 대한 단순 심사 실적 제외)
- ☞ (지역) 위원회 구성원에 지자체 실·국장급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성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
- <증 1-2-3-①> 위원회 위촉 계획 혹은 위촉 결과 보고
- ☞ (학교/사회)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 및 환경교육 추진 주체(지자체 부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환경교육기관·단체, 지역주민)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을 제시
- ☞ 분야는 네트워크 내 구성 범위와 무관하게 해당 네트워크의 주요 목적에 따라 학교/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증 1-2-3-②> 네트워크(협의회) 구성 결과 문서, 최근 1년간 회의 및 행사개최결과 등

<표> 네트워크 주요 활동

분야	명칭 (연월일 /또는 기간)	구성 근거	구성 범위	주요 운영내용 (협력사업)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시 환경교육위원회 (24.5.-현재)	○○시 환경교육조례	지자체 실·국장, 담당 부서장, 교육청, 학계, 민 간 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현황	○○시 환경교육 교사네트워크 (25.1.-12.)	○○ 운영지침	시청, 교육청, 민간단체 등	- 환경교사포럼 개최 등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현황	○○시 환경교육네 트워크 (25.1.- 현재)	○○ 운영지침	시청, 교육청, 민간단체 등	- 지역환경교육한 마당 개최 - 환경교육포럼 개최 등

(가산점) 공공·민간 영역의 유관 기관(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 간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 현황

<표> 협력체계 구축·운영 현황(최근 3개년*) *제출년도 미포함

거버넌스 구축일 (또는 기간)	주요내용	연계기관	주요 운영내용(프로그램명)
2025.3.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기후·환경 교육 커리큘럼 구 성 및 운영	지역환경교육센터	- 청소년을 위한 기후·환경 교육 운영(00회 운영)
		평생교육기관	- 성인 대상 기후·환경 교육 운영 (00회 운영)
		도서관	- 기후·환경 교육 연계 독서교육 운영(00회 운영)
		박물관	- 기후·환경 교육 콘텐츠 전시(00 회 운영)

I-24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현황

☞ 환경교육법 제 15조(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등)에 근거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시설만 작성

<증 1-2-4>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연번	지정공고일	지정기관명	지정일	비고

I-3. 시설 기반

I-3-1. 지역 내 환경교육시설 현황(실내·실외)

☞ 지자체·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실내+실외)

※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혹은 위탁, 지원하는 기관의 시설만 해당함. 중앙정부의 산하·소속기관(시설)은 제외함.

<증 1-3-1> 환경교육시설 사진(시설별 5장 이내)

시설명	소재지	예산지원		운영주체	
		유	무	직접운영	위탁운영
0000 체험장		○		○	
0000 센터		○			○

II. 환경교육 성과

II-1. 지원·운영 성과

II-1-1. 지역 내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원사업 운영 방법(없는 경우 생략)

※ 광역지자체만 해당

- ☞ 지역 내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운영 방법에 대해 기술함.
- ☞ 운영 방법 : 홍보, 안내, 컨설팅 등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증 II-1-1> 홍보 및 안내 자료, 컨설팅 계획안 등

II-1-1.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현황(최대 10개까지만 작성) ※ 기초지자체만 해당

- ☞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후부 지정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모두 작성
- * 프로그램 세부내용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정번호	프로그램명	지정기간	운영주체(기관)

II -1-2. 지역주민 참여행사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박람회, 환경교육주간 등) *제출년도 미포함

☞ 지자체 환경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현황 및 환경교육법 제23조(환경교육주간)에 따라 운영한 주요결과 등

<증 II-1-2> 박람회·환경교육주간 운영 결과보고서, 보도자료(행사별 대표 1건) 등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연간 운영횟수
○○○○박람회		
○○○○한마당		
환경교육주간		

II-1-3. 지역환경교육 연도별 추진과제 성과목표 달성도(최근 3년간*) *제출년도 미포함

☞ 연도별 계획 일정에 따른 추진 과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달성도 확인

※ 광역지자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이행평가 점수로 같음

<증 II-1-3> (광역) 추진 실적 평가 결과 통보 문서

<증 II-1-3> (기초) 연도별 계획대비 실적 보고서, 사업효과 및 만족도 결과보고서 등

※ (광역) 증빙서류만 제출

성과목표	달성 정도
성과목표 60% 미만 달성	
성과목표 60% 이상~70% 미만 달성	
성과목표 70% 이상~80% 미만 달성	
성과목표 80% 이상~90% 미만 달성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성과목표의 비율 산정근거를 기술하시오.

(기반구축 정도, 계획대비 실적, 사업효과 및 만족도 등 요약 서술)

Empty space for text entry

Ⅱ-1-4. 지역 내 기초 환경교육 지원사업 현황 ※광역시자체만 해당

☞ 지자체 혹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한함
 * 프로그램 세부내용 제출하지 않아도됨

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운영주체	지자체/교육청 지원 내용
영역	유형				
기초 지자체	예산지원				홍보, 컨설팅 등
기초 지자체	프로그램 운영(교육				
학교	역량강화(컨설팅, 연수, 세미나 등)				
	행사, 홍보, 안내 등				

II-2. 협력·환류 성과

II-2-1.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사업 수행 현황

구분	운영 현황	
① 지역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횟수	()회
②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위원회, 협의회, 진흥회 등)	운영 횟수	()회
③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 유무	유() 무()

II-2-2. 지역주민 대상 환경교육 인식조사(또는 의견수렴) 현황

☞ (광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증 II-2-2> 지역주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등
 ☞ (기초) 지역주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 인식조사, 워크숍, 토론회 등 실시 결과
 <증 II-2-2> 시민제안서, 인식조사결과보고서, 토론회·워크숍 실시 결과보고서 등

실시기간	개요	정기조사 유무 확인	
		유	무
2024.6.-2024.10.	(광역) 인식조사 개요	○	
2024.10.15.	(기초) 의견수렴 개요/의견수렴 방법		○

II-2-3.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 (광역) 환경교육계획수립 및 의사소통과정 등 지역주민, 환경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
 ※광역자치단체 이행평가 중 [3] 환류충실성 점수로 같음
 ☞ (기초)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환경교육 사업에 반영한 내용
 <증 II-2-3> 시민제안서, 토론회·워크숍 실시 결과보고서 등 의견반영 사례 제시

구분	확인
① 반영	○
② 미반영	

□ 반영 사례 요약 기술

○

-

III. 환경교육계획

III-1.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 지역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로서, 지역에서 수립한 지역환경교육계획에 기초하여 평가함.
 질문에 답변하고 근거로 지역환경교육의 해당 부분을 기재
 <증 III-1> 자체평가서 내용 중 증빙 필요내용 첨부

자체평가서
1.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III-1-1. 국가 및 시도계획의 비전, 목표, 주요 추진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는가?
☐ 답변 내용 ○ ☐ 답변 근거 (계획서 목차 번호 및 제목 기재) ○ ☐ 미흡한 경우, 이유 및 보완 계획 ○
2. 지역성(창의성)
III-1-2. 지역의 상황, 환경현안, 환경자원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창의적 과제와 접근법을 시도하였는가?
☐ 답변 내용 ○ ☐ 답변 근거 (계획서 목차 번호 및 제목 기재) ○ ☐ 미흡한 경우, 이유 및 보완 계획 ○
3. 체계성
III-1-3. 비전, 목표, 전략, 과제의 목표와 내용, 모니터링 등이 체계성을 갖추었는가?
☐ 답변 내용 ○ ☐ 답변 근거 (계획서 목차 번호 및 제목 기재) ○ ☐ 미흡한 경우, 이유 및 보완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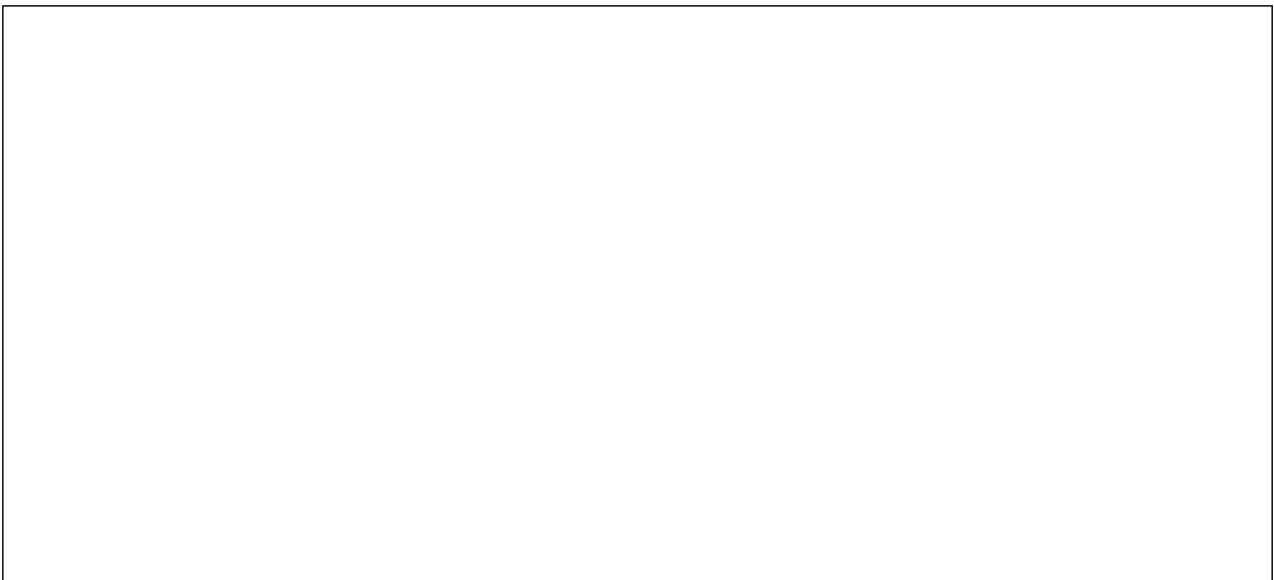
4. 구체성
Ⅲ-1-4. 과제의 내용, 일정이 구체적인가?
☐ 답변 내용 ○ ☐ 답변 근거 (계획서 목차 번호 및 제목 기재) ○ ☐ 미흡한 경우, 이유 및 보완 계획 ○
5. 균형성
Ⅲ-1-5. 환경교육기반,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분야별 균형성을 갖췄는가?
☐ 답변 내용 ○ ☐ 답변 근거 (계획서 목차 번호 및 제목 기재) ○ ☐ 미흡한 경우, 이유 및 보완 계획 ○
6. 성과지표 적절성
Ⅲ-1-6. 추진과제별, 연도별 적절한 성과지표(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답변 내용 ○ ☐ 답변 근거 (계획서 목차 번호 및 제목 기재) ○ ☐ 미흡한 경우, 이유 및 보완 계획 ○
7. 소통 적극성
Ⅲ-1-7.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답변 내용 ○ ☐ 답변 근거 (증빙자료 첨부) ○ ☐ 미흡한 경우, 이유 및 보완 계획 ○

Ⅲ-2.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적절성

Ⅲ-2-1. 환경교육도시 운영 방향

☞ 환경교육도시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비전체계도로 제시

- (비전)
- (목표)
- (추진방향)



<그림> 비전체계도

Ⅲ-2-2. 환경교육도시 사업계획

☞ 향후 3년 간의 환경교육도시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Ⅲ-2-3. 단계별 추진전략

환경교육도시 중·장기 비전 및 실행 의지 등

Ⅲ-2-4. 구체적 일정

단계별 추진전략의 구체적·실행가능한 일정 기술

Ⅲ-2-5. 환경교육도시 성과목표(연차별 작성)

Ⅳ. 첨부자료(증빙서류 등)

☞ 증빙자료는 번호와 제목을 달아 붙일 것

예시. <증 I-1-1> 환경교육 전담팀 업무분장표

<별표1>

광역 지자체 서류심사 체계

구성 요소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서면
기본 요건	조례	지자체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가?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는가?	
	계획 수립	지자체 환경교육계획(5개년)이 수립되어 있는가?	
I. 환경 교육 기반 (40 +4)	I-1. 행정적· 재정적 기반(20+2)	I-1-1. 환경교육 관련 전담부서(과, 팀)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광역 가산점) 교육청 내 전담부서(인력)이 있는가?	5 (2)
		I-1-2. 지자체의 환경교육 예산(최근 3년간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5
		I-1-3. 지자체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현행화 되어 있는가?	5
		I-1-4.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도시 조성 의지가 충분히 드러났는가?	5
	I-2. 지원·협력 기반(15+2)	I-2-1.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가?	4
		I-2-2. 지역환경교육센터에는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4
		I-2-3.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가산점) 공공·민간 영역의 유관기관(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간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현황	5 (2)
		I-2-4.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는가?	2
	I-3. 시설기반(5)	I-3-1. 지역 내 환경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환경교육시설이 충분이 있는가?	5
II. 환경 교육 성과 (25)	II-1. 지원·운영 성과(15)	II-1-1.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3
		II-1-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환경교육주간, 박람회 등)를 운영하고 있는가?	3
		II-1-3.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과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5
		II-1-4. 지역 내 기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가?	4
	II-2. 협력·환류 성과(10)	II-2-1.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 주체 간 협력 사업을 수행했는가?	5
		II-2-2. 지역주민 대상 환경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관심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3
		II-2-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 및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2
III. 환경 교육 계획 (35)	III-1. 지역환경 교육계획 (10) *이행지표와 동일지표	III-1-1.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비전, 목표, 주요 추진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는가?	2
		III-1-2. 지역의 상황, 환경 현안, 환경자원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과제와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2
		III-1-3. 비전, 목표, 전략, 과제의 목표와 내용, 모니터링 등의 관리 방안 등이 체계성을 갖추었는가?	1
		III-1-4.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추진과제 내용과 일정이 실행가능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2
		III-1-5. 환경교육기반,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분야별 균형성을 갖추었는가?	1
		III-1-6. 추진과제별, 연도별 적절한 성과지표(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1
		III-1-7.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1
	III-1. 환경교육도 시 계획의 적절성(25)	III-2-1.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비전, 추진방향이 적절한가?	5
		III-2-2.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사업계획이 우수한가?	5
		III-2-3.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III-2-4.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추진 과제와 일정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가?	5
		III-2-5.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성과지표가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기초 지자체 서류심사 지표 체계

구성 요소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서면
기본 요건	조례	지자체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가?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는가?	
	계획 수립	지자체 환경교육 종합계획(5개년)이 수립되어 있는가?	
I. 환경 교육 기반 (40 +2)	I-1. 행정적· 재정적 기반(20)	I-1-1. 환경교육 관련 전담부서(과, 팀)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5
		I-1-2. 지자체의 환경교육 예산(최근 3년간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5
		I-1-3. 지자체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현행화 되어 있는가?	5
		I-1-4.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도시 조성 의지가 충분히 드러났는가?	5
	I-2. 지원·협력 기반(15+2)	I-2-1.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가?	4
		I-2-2. 지역환경교육센터에는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4
		I-2-3.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가산점) 공공·민간 영역의 유관기관(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간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현황	5 (2)
		I-2-4.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있는가?	2
	I-3. 시설 기반(5)	I-3-1. 지역 내 환경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환경교육시설이 충분이 있는가?	5
II. 환경 교육 성과 (25 +2)	II-1. 운영 성과 (15+2)	II-1-1.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가산점) 지역 내 환경교육 우수학교·녹색생활 실천학교가 있는가?	5 (2)
		II-1-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환경교육주간, 박람회 등)를 운영하고 있는가?	5
		II-1-3.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과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5
	II-2. 협력·환류 성과(10)	II-2-1.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 주체 간 협력 사업을 수행했는가?	5
		II-2-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 토론회, 혹은 워크숍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	3
		II-2-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 및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2
III. 환경 교육 계획 (35)	III-1. 지역환경 교육계획 (10) *이행지표와 동일지표	III-1-1.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비전, 목표, 주요 추진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는가?	2
		III-1-2. 지역의 상황, 환경 현안, 환경자원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과제와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2
		III-1-3. 비전, 목표, 전략, 과제의 목표와 내용, 모니터링 등의 관리 방안 등이 체계성을 갖추었는가?	1
		III-1-4.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추진과제 내용과 일정이 실행가능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2
		III-1-5. 환경교육기반,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분야별 균형성을 갖추었는가?	1
		III-1-6. 추진과제별, 연도별 적절한 성과지표(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1
		III-1-7.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1
	III-2. 환경교육도 시 계획의 적절성 (25)	III-2-1.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비전, 추진방향이 적절한가?	5
		III-2-2.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사업계획이 우수한가?	5
		III-2-3.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III-2-4.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추진 과제와 일정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가?	5
		III-2-5.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성과지표가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3. 현장 심사 평가지표

구성 요소	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I. 환경 교육 기반	I-1. 행정적·재정적 기반	지자체장이 환경교육 및 지역환경교육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와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가?	10
	I-2. 지원·협력 기반	지자체 담당부서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구성원이 환경교육 및 지역환경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추진력, 업무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10
II. 환경 교육 성과	II-1. 운영 성과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는가?	10
	II-2. 협력·환류 성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기여하고 있는가?	10
III. 환경 교육 도시 운영 계획	III-1.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계획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0

<별표 2-1>

1 광역 지자체 세부 평가문항 및 확인서류

○ 신청 기본 요건

확인 내용	해당여부
1.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1-1.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여부	
⇒ 확인서류)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 환경교육센터 지정	
2-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여부	
⇒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상황	
3. 환경교육계획 수립	
3-1.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여부	
⇒ 확인서류) 5년 단위 계획수립 일정에 맞춘 지역환경교육계획 : 용역보고서가 아닌 지자체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제출	

※ 신청자격 요건은 심사에 적격한 도시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필수요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전에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심사대상 도시를 상정

※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환경교육도시 선정 심사대상 해당

○ 기반 부문 (40점+4)

평가내용	배점
점수	
I-1. 행정적·재정적 기반	20(+2)
I-1-1. 환경교육 관련 전담부서(과, 팀)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없음(0점)	
② 전담 부서는 없고, 전담인력 1인 있음(2점)	
③ 전담 부서는 없고, 전담 인력(2인 이상)은 있음(3점)	
④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2인 이하)이 있음(4점)	
⑤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3인 이상)이 있음(5점)	
[확인서류] 지자체 환경교육 전담부서 구성 및 업무분장표	
(가산점 항목) 시·도 교육청에 환경교육 관련 전담부서(과, 팀)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점수 (5)점
	점수 (+2)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①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없음(0점) ② 전담 부서는 없고, 전담인력 1인 있음(1점) ③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2인 이상)이 있음(2점)	
[확인서류]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전담부서 구성 및 업무분장표	
I-1-2. 지자체의 환경교육 예산(최근 3년간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지자체 인구수 기준(1인당 금액) ① 하위 10% 이내(0점) ② 상위 70% 초과~90% 이내(1점) ③ 상위 50% 초과~70% 이내(2점) ④ 상위 30% 초과~50% 이내(3점) ⑤ 상위 10% 초과~30% 이내(4점) ⑥ 상위 10% 이내(5점) ※ 당해연도 심사대상 내 상대평가(광역/기초별 순위에 따라 평가)	
[확인서류] 지자체 환경교육 예산 현황표(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환경교육 예산표, 국비, 지방비, 기금 등 예산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 확인 및 평가 → 환경교육 예산은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환경소양 함양 교육 사업 및 운영 지원비를 의미함(종사자 교육, 단순 홍보사업,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사업 등은 불포함). 이에 해당하는 예산만 평가근거로 활용 → 해당 사업 예산의 범위 : - 환경문화 : 지속가능발전교육, 생명윤리 교육, 동물보호교육, 자연환경보전 교육 - 생활환경 : 소음교육, 폐기물 및 자원순환교육, 환경보건교육 - 지구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교육, 대기 관련 교육, 에너지 교육 - 자연환경 : 물 관련 교육, 하천 관련 교육, 토양 관련 교육, 생태계 관련 교육, 연안·갯벌 교육,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교육, 수목원·정원 교육, 도시숲 교육, 도시농업교육	점수 (5)점
I-1-3. 지자체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현행화 되어 있는가?	
[평가결과-누적평가] ① 지자체 조례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현행화되어 있음(2점) ② 지자체 조례에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행화되어 있음(1점) ③ 지자체 조례에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화되어 있음(2점)	점수 (5)점
[확인서류] 지자체 조례	
I-1-4.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도시의 의지가 충분히 드러났는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충분(4점) ⑤ 매우 충분(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비전, 방향성,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관련 공약 및 핵심 정책, 선언, 협약, 지자체장 참여 행사 실적	
I-2. 지원·협력 기반	15(+2)
I-2-1.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0점)	점수 (4)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②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30%미만을 지원하고 있음(1점) ③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30%이상~50%미만을 지원하고 있음(2점) ④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50%이상~70%미만을 지원하고 있음(3점) 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70%이상을 지원하고 있음(4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센터 예산서(센터 전체 예산 대비 지자체 지원 예산 확인)	
I-2-2. 지역환경교육센터에는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없음(0점) ②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환경교육사 없음) (1점) ③ 환경교육사 3급 1인 이상 포함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2점) ④ 환경교육사 3급 2인 이상 포함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3점) ⑤ 환경교육사 2급 1인 이상, 3급 2인 이상 포함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4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센터 인적 구성원 현황 및 자격증 사본	점수 (4)점
I-2-3.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결과-항목누적평가] ① 조례에 근거한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1점) ②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에 지자체 실·국장급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1점) ③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에 교육청, 민간단체가 포함되어 있음(1점) ④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성·운영되고 있음(1점) 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성·운영되고 있음(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 구성결과 내부분서,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결과 보고서(회원명부 포함)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는 교사, 교육청이 포함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 관련 지역 민간단체가 포함	점수 (5)점
(가산점 항목) 공공·민간 영역의 유관기관(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간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않음(0점) ②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2회 이하 실시함(1점) ③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함(2점) [확인서류]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시설목록,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 거점기관에서 실시한 환경교육 실적(공문 등)	점수 (+2)점
I-2-4.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정 공고를 한 바 없고,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없음(0점) ② 지정 공고는 하였으나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없음(1점) ③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이 1개 이상 있음(2점)	점수 (2)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확인서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문	
I-3 시설 기반	5
I-3-1. 지역 내 환경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환경교육시설이 충분한가?(5)	
[평가결과] ① 지자체/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지만 환경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 있음(1점) ② 지자체/교육청이 직접 운영 또는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이 1개소 있음(2점) ③ 지자체/교육청이 직접 운영 또는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이 2개소 있음(3점) ④ 지자체/교육청이 직접 운영 또는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이 3개소 이상~5개소 미만 있음(4점) ⑤ 지자체/교육청이 직접 운영 또는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이 5개소 이상 있음(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지자체 혹은 교육청 내 운영되는 환경교육 시설 목록,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실내+실외) 리스트와 지원 내용 ※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혹은 위탁, 지원하는 기관의 시설만 해당함. 중앙정부의 산하소속기관(시설)은 제외함.	

○ 성과 부문(2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II-1. 지원·운영 성과	15
II-1-1.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음(0점) ②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를 지원함(1점) ③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3점)	점수 (3)점
[확인서류] 광역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II-1-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환경교육주간, 박람회 등)를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 운영실적 없음 (0점) ②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였음(1점) ③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고, 매년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였음(3점)	점수 (3)점
[확인서류] 환경교육주간 및 지역민 참여 행사 운영 결과	
II-1-3.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과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점수 (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성과목표 60% 미만 달성)(1점) ② 부족(성과목표 60% 이상~70% 미만 달성)(2점) ③ 보통(성과목표 70% 이상~80% 미만 달성)(3점) ④ 우수(성과목표 80% 이상~90% 미만 달성)(4점) ⑤ 매우 우수(성과목표 90% 이상 달성)(5점)	
[확인서류] 자체평가서 ※이행평가 점수로 같음할 수 있음	
II-1-4. 지역 내 기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가?	
[평가결과] ① 기초지자체 또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없음(0점) ② 기초지자체 또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연간 1건 있음(1점) ③ 기초지자체 또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연간 2건 이상 있음(2점) ④ 기초지자체 및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연간 1건 있음(3점) ⑤ 기초지자체 및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연간 2건 이상 있음(4점)	점수 (4)점
[확인서류] 지원사업 성과를 알 수 있는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문 등	
II-2. 협력·환류 성과	10
II-2-1.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 사업을 수행했는가?	
[평가결과-누적 평가] ① 협력 사업을 수행한 바 없음(0점) ② 지역환경교육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2점) ③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연 1회 운영되고 있음(1점) ④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가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2점)	점수 (5)점
[확인서류] 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네트워크 운영결과 보고서(협력사업 결과 포함)	
II-2-2. 지역주민 대상 환경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관심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없다.(0점) ② 있다.(2점) ③ 정기적(1년 1회 이상)으로 한다.(3점)	점수 (3)점
[확인서류] 지역주민 대상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II-2-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 및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점수 (2)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① 반영한 바 없다.(0점) ② 일부 반영하고 있다.(1점) ③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2점)	
[확인서류] 자체평가서, 지역주민 대상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반영 내용	

○ 계획 부문(3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Ⅲ-1.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10
Ⅲ-1-1.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비전, 목표, 주요 추진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는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0.5점) ③ 보통(1점) ④ 우수(1.5점) ⑤ 매우 우수(2점)	점수 (2)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자체평가서 ※이행평가 점수로 갈음할 수 있음	
Ⅲ-1-2. 지역의 상황, 환경 현안, 환경자원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과제와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1점) ③ 우수(2점)	점수 (2)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자체평가서 ※이행평가 점수로 갈음할 수 있음	
Ⅲ-1-3. 비전, 목표, 전략, 과제의 목표와 내용, 모니터링 등의 관리 방안 등이 체계성을 갖추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점수 (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자체평가서 ※이행평가 점수로 갈음할 수 있음	
Ⅲ-1-4.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추진과제 내용과 일정이 실행가능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추진 과제와 일정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0점) ② 추진 과제와 일정 중 일부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1점)	점수 (2)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③ 추진 과제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실행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임(2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자체평가서 ※이행평가 점수로 같음할 수 있음	
Ⅲ-1-5. 환경교육기반,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분야별 균형성을 갖추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점수 (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Ⅲ-1-6. 추진과제별, 연도별 적절한 성과지표(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점수 (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Ⅲ-1-7.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점수 (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Ⅲ-2.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	25
Ⅲ-2-1.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비전, 추진방향이 적절한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적절(0점) ② 부적절(2점) ③ 보통(3점) ④ 적절(4점) ⑤ 매우 적절(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비전, 추진방향, 목표	
Ⅲ-2-2.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사업계획이 우수한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Ⅲ-2-3.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Ⅲ-2-4.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추진 과제와 일정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가?	
[평가결과]	점수 (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III-2-5.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성과지표가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2 기초 지자체 세부 평가문항 및 확인서류

○ 신청 기본 요건

확인 내용	해당여부
1.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1-1.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여부	
⇒ 확인서류)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 환경교육센터 지정	
2-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여부	
⇒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상황	
3. 환경교육계획 수립	
3-1.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여부	
⇒ 확인서류) 5년 단위 계획수립 일정에 맞춘 지역환경교육계획 : 용역보고서가 아닌 지자체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제출	

※ 신청자격 요건은 심사에 적격한 도시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필수요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전에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심사대상 도시를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환경교육도시 선정 심사대상 해당

○ 기반 부문(40점+2)

평가내용	배점 점수
I-1. 행정적·재정적 기반	20
I-1-1. 환경교육 관련 전담부서(과, 팀)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없음(0점)	
② 전담 부서는 없고, 전담인력 있음(3점)	
③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이 있음(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지자체 환경교육 전담부서 구성 및 업무분장표	
I-1-2. 지자체의 환경교육 예산(최근 3년간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지자체 인구수 기준(1인당 금액)	
① 하위 10% 이내(0점)	
② 상위 70% 초과~90% 이내(1점)	
③ 상위 50% 초과~70% 이내(2점)	
④ 상위 30% 초과~50% 이내(3점)	점수 (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⑤ 상위 10% 초과~30% 이내(4점) ⑥ 상위 10% 이내(5점)	
[확인서류] 지자체 환경교육 예산 현황표(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환경교육 예산표, 국비, 지방비, 기금 등 예산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확인 및 평가 → 환경교육 예산은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환경소양 함양 교육 사업 및 운영 지원비를 의미함(종사자 교육, 단순 홍보사업,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사업 등은 불포함). 이에 해당하는 예산만 평가근거로 활용 → 해당 사업 예산의 범위 : - 환경문화 : 지속가능발전교육, 생명윤리 교육, 동물보호교육, 자연환경보전 교육 - 생활환경 : 소음교육, 폐기물 및 자원순환교육, 환경보건교육 - 지구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교육, 대기 관련 교육, 에너지 교육 - 자연환경 : 물 관련 교육, 하천 관련 교육, 토양 관련 교육, 생태계 관련 교육, 연안·갯벌 교육,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교육, 수목원·정원 교육, 도시숲 교육, 도시농업교육	
I-1-3. 지자체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현행화 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자체 조례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법 제13조)에 관한 사항이 현행화 되어 있음(2점) ② 지자체 조례에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행화되어 있음(1점) ③ 지자체 조례에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화되어 있음(2점)	점수 (5)점
[확인서류] 지자체 조례	
I-1-4.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도시 조성 의지가 충분히 드러났는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점수 (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비전, 방향성,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관련 공약 및 핵심 정책, 선언, 협약, 지자체장 참여 행사 실적	
I-2. 지원·협력 기반	15(+2)
I-2-1.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0점) ②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30%미만을 지원하고 있음(1점) ③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30%이상~50%미만을 지원하고 있음(2점) ④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50%이상~70%미만을 지원하고 있음(3점) 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예산의 70%이상을 지원하고 있음(4점)	점수 (4)점
[확인서류] 지자체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예산지원 현황과 지원된 예산의 활용 현황	
I-2-2. 지역환경교육센터에는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점수 (4)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①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없음(0점) ②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환경교육사 없음) (1점) ③ 환경교육사 3급 1인 이상 포함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2점) ④ 환경교육사 3급 2인 이상 포함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3점) ⑤ 환경교육사 2급 1인 이상, 3급 2인 이상 포함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근무(4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센터 인적구성원 현황 및 자격현황	
I-2-3.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5)	
[평가결과-누적평가] ① 조례에 근거한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1점) ②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에 지자체 실·국장급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1점) ③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에 교육지원청, 민간단체가 포함되어 있음(1점) ④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가 구성·운영되고 있음(1점) 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가 구성·운영되고 있음(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위원회(협의회) 구성결과 내부분서,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결과 보고서(회원명부 포함)	점수 (5)점
(가산점 항목) 공공·민간 영역의 유관기관(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간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않음(0점) ②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2회 이하 실시함(1점) ③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함(2점) [확인서류]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시설목록, 환경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과학관·학교 등 거점기관에서 실시한 환경교육 실적(공문 등)	점수 (+2)점
I-2-4.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없음(0점) ②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이 1개 이상 있음(2점) [확인서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현황	점수 (2)점
I-3 시설 기반	5
I-3-1. 지역 내 환경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환경교육시설이 충분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지자체/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지만 환경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 있음(1점) ② 지자체/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또는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이 1개소 있음(2점) ③ 지자체/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또는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이 2개소 있음(3점) ④ 지자체/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또는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이 3개소 이상 있음(5점) [확인서류] 지자체 내 운영되는 환경교육 시설 목록,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지원하는 환경교육시설(실내+실외) 리스트와 지원 내용	점수 (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혹은 위탁, 지원하는 기관의 시설만 해당함. 중앙정부의 산하·소속기관(시설)은 제외함.	

○ 성과 부문(25점+2)

평가내용	배점
	점수
II-1. 운영 성과	15(+2)
II-1-1. 지역 내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없음 (0점) ②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3개 미만 있음(1점) ③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3개 이상~5개 미만 있음(2점) ④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5개 이상~7개 미만 있음(3점) ⑤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7개 이상~9개 미만 있음(4점) ⑥ 지역 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9개 이상 있음(5점)	
[확인서류] 지자체 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현황	
(가산점 항목) 지역 내 환경교육 우수학교·녹색생활 실천학교가 있는가?	점수 (+2)점
[평가결과] ① 환경교육 우수학교·녹색생활 실천학교가 없음(0점) ② 환경교육 우수학교·녹색생활 실천학교를 신청한 학교 있음(1점) ③ 환경교육 우수학교·녹색생활 실천학교 있음(2점)	
[확인서류] 지역 내 환경교육 우수학교 여부	
II-1-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환경교육주간, 박람회 등)를 운영하고 있는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지역민 참여형 행사 운영실적 없음 (0점) ②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였음(2점) ③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고, 1회 이상 환경교육주간 운영하였음(3점) ④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고, 매년 환경교육주간 운영하였음(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주간 운영 결과	
II-1-3.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과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성과달성 결과 미제출(0점) ② 매우 부족(성과목표 60% 미만 달성)(1점) ③ 부족(성과목표 60% 이상~70% 미만 달성)(2점) ④ 보통(성과목표 70% 이상~80% 미만 달성)(3점) ⑤ 우수(성과목표 80% 이상~90% 미만 달성)(4점) ⑥ 매우 우수(성과목표 90% 이상 달성)(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확인서류] 자체평가서, 이행평가보고서 ※ 환경교육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	
II-2. 협력·환류 성과	10
II-2-1.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 사업을 수행했는가?	
[평가결과-누적 평가] ① 협력 사업을 수행한 바 없음(0점) ② 지역환경교육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2점) ③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연 1회 운영되고 있음(1점) ④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가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2점)	점수 (5)점
[확인서류] 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네트워크 운영결과 보고서(협력사업 결과 포함)	
II-2-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 토론회, 혹은 워크숍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없다.(0점) ② 있다.(1점) ③ 정기적(1년 1회 이상)으로 한다.(3점)	점수 (3)점
[확인서류] 자체평가서, 조사, 토론회, 워크숍 실시 결과	
II-2-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 및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반영한 바 없다.(0점) ② 일부 반영하고 있다.(1점) ③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2점)	점수 (2)점
[확인서류] 자체평가서, 의견수렴 결과반영 내용 ※ 지역주민의 요구 및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	

○ 계획 부문 (35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III-1.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10
III-1-1. 국가·광역환경교육계획의 비전, 목표, 주요 추진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는가?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0.5점) ③ 보통(1점) ④ 우수(1.5점) ⑤ 매우 우수(2점)	점수 (2)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평가내용	배점
	점수
Ⅲ-1-2. 지역의 상황, 환경 현안, 환경자원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과제와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1점) ③ 우수(2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 지역환경교육계획에서 제시되는 추진과제들의 배경과 필요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계획인지 확인	점수 (2)점
Ⅲ-1-3. 비전, 목표, 전략, 과제의 목표와 내용, 모니터링 등의 관리 방안 등이 체계성을 갖추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 지역환경교육계획에서 제시되는 추진과제들의 배경과 필요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계획인지 확인	점수 (1)점
Ⅲ-1-4.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추진과제 내용과 일정이 실행가능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추진 과제와 일정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0점) ② 추진 과제와 일정 중 일부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1점) ③ 추진 과제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실행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임(2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점수 (2)점
Ⅲ-1-5. 환경교육기반,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분야별 균형성을 갖추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점수 (1)점
Ⅲ-1-6. 추진과제별, 연도별 적절한 성과지표(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점수 (1)점
Ⅲ-1-7.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평가결과] ① 부족(0점) ② 보통(0.5점) ③ 우수(1점) [확인서류] 지역환경교육계획 요약문(용역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대상으로 함) → 어떤 종류와 방법의 의사소통과정을 수행했는지, 누가 참여하였는지 검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지역 참여를 통한 학습을 독려하기 위함	점수 (1)점

평가내용	배점
	점수
Ⅲ-2.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	25
Ⅲ-2-1.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비전, 추진방향이 적절한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매우 부적절(0점) ② 부적절(2점) ③ 보통(3점) ④ 적절(4점) ⑤ 매우 적절(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비전, 추진방향, 목표 ※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지정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교육 역량 향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이러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취지에 부합한 비전과 추진방향, 목표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Ⅲ-2-2. 지자체가 제시한 환경교육도시의 사업계획이 우수한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 환경교육도시 지정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이 지역성을 반영하여 창의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Ⅲ-2-3.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 지정 3년 간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별 전략의 적절성 평가.	
Ⅲ-2-4.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추진 과제와 일정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Ⅲ-2-5. 환경교육도시 운영 계획의 성과지표가 명료하고, 목표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점수 (5)점
[평가결과] ① 매우 부족(0점) ② 부족(2점) ③ 보통(3점) ④ 우수(4점) ⑤ 매우 우수(5점) [확인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3년 간) 사업계획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2-2>

현장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배점
		점수
1. (행정적·재정적 기반) 지자체장이 환경교육 및 지역환경교육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와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가?		10점
① 매우 부족(2점) ② 부족(4점) ③ 보통(6점) ④ 우수(8점) ⑤ 매우 우수(10점)		선택 점수 ()점
2. (지원·협력 기반) 지자체 담당부서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구성원이 환경교육 및 지역환경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추진력, 업무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10점
① 매우 부족(2점) ② 부족(4점) ③ 보통(6점) ④ 우수(8점) ⑤ 매우 우수(10점)		선택 점수 ()점
3. (환경교육 운영 성과)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는가?		10점
① 매우 부족(2점) ② 부족(4점) ③ 보통(6점) ④ 우수(8점) ⑤ 매우 우수(10점)		선택 점수 ()점
4. (협력·환류 성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기여하고 있는가?		10점
① 매우 부족(2점) ② 부족(4점) ③ 보통(6점) ④ 우수(8점) ⑤ 매우 우수(10점)		선택 점수 ()점
5.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계획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0점
① 매우 부족(2점) ② 부족(4점) ③ 보통(6점) ④ 우수(8점) ⑤ 매우 우수(10점)		선택 점수 ()점
합계		점
평가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제 호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소재지:

3.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직인